# 크레인의 안전조치

양중기라함은크레인,리프트,곤도라,승강기 등의 기계를 말하며 각기계별 안전조치는 정격하중의 표시,일정한 신호방법, 정기적인 자체검사 등 전반적인 안전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양중기 중하나인 크레인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자.

# 1. 크레인 운전시 안전조치

1) 작업전에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은 수평되고 견고한 지면을 선택하여 장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붐을세운채로현장주행을금지해야한다.

4 화물 인양시에는 능력표와 필히 비교한 후 인양 해야한다.

5) 화물을 인양한 채 운전석 이탈은 절대로 금지해 야한다.

⑥작업장의 협소로 아웃트리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받침목을 고이고 규정된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 ·유지해야한다.

⑦작업반경과 인양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하며 작업반경 내에는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을 금한다.

8) 중랑품을 취급할 경우 로프가 늘어나므로 실제 작업반경보다 약간 긴 것으로 인양능력을 계산해야 한다.

9 작업반경이 클수록 인양능력은 저하되므로 무리 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크레인이 전복되기 쉽기 때문 에 절대로 무리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10) 작업중인 드럼은 항상 로프를 완전히 감았을 때 두바퀴 이상 여유가 있도록 감겨져야 한다.

11) 작업신호는 지정된 책임자 또는 지정된 요원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인부나 무경험자가 신호를 해서 는아니되며 신호자가 책임지도록주지시켜야한다.

12) 드럼에는 회전제어기나 역회전방지기가 장치 되어야한다

13) 정지시킬 때에는 모든 조작레버를 중립위치에 둔다음메인스위치를끈다.

### 2. 크레인 취급시 안전조치

1) 크레인의 기초는 설치하는 기계능력, 사용조건 등에 의해 미리 예측하여 산출된 능력에 대해 충분히 견딜수있도록설치한다.

2기초의 시공시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데릭, 타워크레인 등의 공중시공일 때에도 동일 한방법으로 행한다.

4기초상단은 Level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수평을 유지하도록한다.

5) 앵커볼트는 기초의 철근 등에 용접을 하거나 I형 강의 이음을 넣어서 작용하중에 견디도록 한다.

# 3. 크레인 설치시 안전조치

1) 기계는 부등침하가 없는 기초위에 수평하게 설치 한다

2) 조립작업시에는 정해진 지휘자의 지시하에 행한 다.

③ 옥상설치의 경우 강풍으로 이동 및 전도되지 않 도록한다.

4기계는능력표시를하고운전자를기록한다.

5) 조립후 1주일에 1회정도볼트에 재조임을 행하여 너트의 느슨함을 점검한다.

⑥ 마스트 들어올리기, 서브·붐의 설치작업 등은 철 저히 행하며 작업관계자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⑦이웃트리거는확실히내려반력이가해지도록설 치한다.

# 4. 크레인 점검 및 정비시 안전조치

- 1) 매일정기적으로청소한다.
- 2급유시절대금연및 엔진정지를한다.
- 3) 각부의 급유장소에 급유한다.
- 4 와이어로프는 시브에 바르게 걸려 있는지, 드럼 에바르게 감겨져 있는지를 점검한다.
  - 5각안전장치의작동을확인한다.
  - 6) 붐의 선회범위내의 장애물유무등을 확인한다.
- 7) 시동전에는 반드시 작동연결부분의 이완상태 및 공구등이 흐트러져 있지 않은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8 장비가 작동중에는 절대로 부품관리, 주유, 조임 혹은조절등을 금한다.
- ⑨ 각부의 볼트,너트,키 등의 탈락이 없는가를 점검하다.

10) 클러치 브레이크,유압기계 등의 압력 및 작업상 황을 점검한다.

# 5. 크레인 운전 중 안전조치

- 1) 안전장치를제거하고운전해서는안된다.
- 2정해진능력이상의작업을행해서는안된다.
- ③기동정지의충격을피해원활한운전을행한다.
- ♣비상시에는비상정지버튼을눌러대처한다.
- 5)작업원을달아올리기짐에 태워서는안된다.
- 6 달아올리기 짐은작업원의 머리 위에서 흔들거려 서는 아된다.
  - 7)기중상태에서는절대로급회전을금한다.
  - 8 붐은 70°이상 올리지 말아야 하며 20°이상 내려

진상태의작업을 금한다.

- 9) 정차 중에는 회전제동 및 하체제동을 반드시 걸 어놓아야한다.
  - 10) 사람이나장비위를선회하여서는안된다.
- 11) 트럭크레인은 최대 시속 50km/h이상 주행해서 는 안된다.
- 12) 고압선밑에서는붐이나장비가최소3m이상격 리된장소에서작업하여야한다.
- 13) 조종원은 짐이 달아 올려지고 있을 때는 운전석 을떠나서는 안된다.
- 14) 크레인에의해굴착된가장자리가까이 및 강우 와 하천의 수위증가에 따라 운행을 할 수 없거나 불안 한장소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 15) 운전원은 신호수에 의해 신호를 받고나서 부저 등을 울린 후 작업에 착수한다.
- 16) 운전중에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크레인을 바로 정지시켜 상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17) 크레인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짐이 미끄러지 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달아올려지고 있는 하중의 바로 위에후크를 사용해야 한다.

# 6. 크레인 운전 후 안전쪼치

- 1) 각부의이상을 둘러보아 필요장소에 급유한다.
- 2) 기계를 장기간 방치해 놓을 때는 붐을 지면에 놓 아야한다.
- ③조종원은운전실을 떠나기 전에 엔진을 정지시켜 야한다.
- 4 지브 및 후크의 위치가 소정의 장소에 있는지 확 이하다.
  - 5 운전의 메인스위치를 끄고운전실을 잠근다.
  - 6)이상부위,수리부위는반드시일지에기록한다.

#### 7. 크레인 관계법규상 안전조치

# 작업 시작전교육 건설부문

#### 1) 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작기준과 안전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방호장치

- ①사업주는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 치, 비상정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경보장치 등 을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해 두어야한다.
- ②권과방지장치에 대하여는 후크,그래브 및 버킷 등 달기구의 상면과 드럼 시브,크롤리후레임 기타 달기구 또는 권상용 시브의 상면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건의 하면과의 간격이 25cm이상이 되도록조정해두어야한다.
- ③권과방지장치를구비하지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 3) 아저밸브

사업주는과도한입력상승을 방지하기위하여정격 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건 때의 수압 또는 유압에 상 당하는 압력이하로 작동되도록 조정해 두어야 한다.

#### 4 해지장치

사업주는 후크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후크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 다.

#### 5)취업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해자격을 가진자를 종사시켜야 한다.

#### 6) 과부하의 제하

사업주는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초과 사용할 때에는 그 결과 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7) 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경사각범위를넘어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8) 탑승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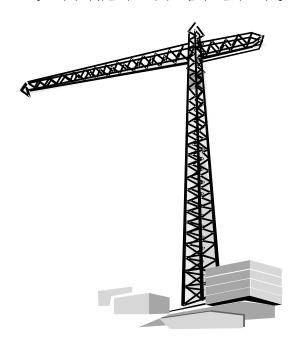
사업주는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달 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탑승설비를 사용할 시에는 탑승설비의 전위 및 탈락 방지, 안전대(구명대)사용, 동력하강법 등을 조치하여 야한다

#### 9)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와이어로프의 내각측으로부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리프팅 마그넷트 부착 크레인을 사용할 때 달아올려진 화물의 아래쪽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1()) 병렬설치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사업주는 동일한 주행로에 병렬 설치되어 있는 주 행크레인 수리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 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주행



로상에 스토퍼를 설치하는 등 충돌 방지 조치를 하여 야한다.

11) 폭풍에의한이탈방지

사업주는 풍속 30m/sec 초과시 옥외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조립등의작업

사업주는 크레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 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 (1)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의하여 작업을 실 시할것
- ②작업규격에관계근로자외출입을금지시키고그 취지를보기쉬운곳에표시할것
- ③폭풍,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지시 킬것
- (4)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공간을확보하고장애물이없도록할것
- (5)들어올리거나내리는기자재는균형을유지하면 서작업을실시하도록할것
- (6) 크레인의 능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 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 나지않도록할것
- (7)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하는 것 을순차적으로결합하고분해할것
- (8)작업시안전담당자를지정하고작업방법과근로 자배치 · 지휘하는일 기구점검 안전대 등보호 구착용을감시토록할것

13) 작업시작전의 점검

사업주는 당해작업 시작전에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하여야한다.

- ①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 ②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 태
- ③ 와이어로프가통하고있는곳의 상태

14) 폭풍등으로인한이상유무점검

사업주는 풍속 30m/sec 초과 및 중진이상의 지진 후에 작업을 할 때에는 크레인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하다.

15) 구조물또는설비사이의 통로

사업주는구조물또는설비와의사이에 60cm 이상 의통로를설치하여야한다.

16) 구조물등의 벽체와 통로와의 간격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그간격을 30cm이하로하여야한다.